

대전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2552 판결 [점유회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나25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3385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8. 9. 18.

판결 선고 2018. 10. 3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3. 27. 선고 2017가단338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주택(별지 도면 표시 ①

414.72m² 부분, ② 581.94m² 부분, ③ 420.32m² 부분, ④ 390.25m² 부분)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수진

판사김영진

판사조영민

별지